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06일 (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12층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37(금토동) 인피니티타워 E동)
3. 회의 목적 사항
 - 가. 부의 안건
 - 제 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붙임1: 합병(안)]
 -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붙임2: 정관신구조대조표(안)]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현 섭 (직인생략)

□ 참석자 지침물 안내

본인 출석 시	대리인 출석 시	본인 대리인 모두 불출석 시
① 참석장 ② 인감증명서 1부 ③ 인감도장 ④ 본인 신분증	① 대리인 출석 위임장 ^{※별첨1} 1부 ② 공증위임장 ^{※별첨3} 1부 ③ 위임하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부 (반드시 3개월 이내) ④ 대리인의 신분증	① 의결권 위임장 ^{※별첨2} 1부 ② 공증위임장 ^{※별첨3} 1부 ③ 위임하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부 (반드시 3개월 이내)

* 각 위임장에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을 선명히 찍어주십시오.

* 위 지참물 누락 시, 참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 출석 시 인감도장 및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송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37(금토동) 인피니티타워 E동 12층
 슈어소프트테크(주) 재무기획실

[※별첨1]

위 임 장

주주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유 주 식 수	_____주
의결권 있는 주식수	_____주

본인은 _____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개최되는 주주총회
(그 연회, 계속회를 포함)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권한

*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주주명부 상 의결권이 있는 소유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 . .

주주 성명

(인감날인)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귀중

[※별첨2]

위임장

본인은 2023년 03월 06일에 개최하는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그 연회, 계속 회를 포함)에서 박주현(슈어소프트테크(주) 직원)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1. 주주번호(주민등록번호)	
2. 소유주식수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주
4. 위임할 주식 수	주

*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주주명부상 의결권이 있는 소유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 별 찬반 여부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위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 또는 √ 표시를 하셔서 수신처 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기한: 2023년 03월 3일까지)

6. 새로 산정된 안건이나 변경,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의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주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시: 2023년 월 일 시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귀중

[※별첨3]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대리인) 주 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_____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 받는 행위

2023년 유 유

위 임 인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소

[※붙임1: 합병(안)]

가. 합병당사회사

- ① 피합병회사(소멸법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2호 주식회사
- ② 합병회사(존속법인):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나.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사업확장, 상장회사로의 이미지 제고 등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다. 합병의 방법

비상장법인인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 22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라.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 ① 합병비율: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소멸회사의 액면금액 금 1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액면금액 금 100원인 보통주식 0.3746020주를 배정함.
- ② 산출근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함.
- ③ 합병비율의 산출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의견에 따름.

마.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2,412,436주 {라. 항 1)에서 기재한 바에 따라, 해당 주식을 각 주주의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하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상장초일 증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바. 합병교부금

별도의 합병 교부금은 없음.

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하여 주주총회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아. 주주명부 폐쇄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고 주주명부를 폐쇄하고자 함.

자. 주요 합병일정(예정)

구분	변경 후
이사회결의	2022년 09월 05일
합병계약일	2022년 09월 05일
주주명부확정기준일	2023년 02월 08일
주주명부폐쇄	2023년 02월 09일 ~ 2023년 02월 16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2023년 03월 06일 ~ 2023년 03월 26일
임시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6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4월 10일
합병기일	2023년 04월 11일
합병종료보고이사회 결의일	2023년 04월 11일
합병등기일	2023년 04월 14일

차. 기타사항

합병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본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붙임2: 정관신구조대조표(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3 조(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3 조(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본 회사의 본점은 성남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본사를 성남시로 이전
<신설>	제8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59조(특수관계법인) 본 정관에서의 “특수관계법인” 이란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2.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집행임원·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제60조(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한 신용공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 특수관계법인 간 부(富)의 이전 방지

	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5호에서 정하는 거래 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제61조(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 제한) ① 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제60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 매출 또는 매입 등의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사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규모는 원칙적으로 단일 3억원 이하, 해당 사업연도 내 누적 3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시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가 전원 참석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체결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거래의 목적, 내용, 총거래금액, 날짜, 기간 및 조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일 거래규모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해당 사업연도 내 누적 거래규모가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2조(결직금지) 이사는 특수관계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부칙(2023. 03. 06.) 이 정관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